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431호)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근거 법령 및 조문 변경 등 일부 개정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령의 명칭 및 조항 수정(안 제8조)

- 1) 품질검사 근거법령인 ‘건설기술 진흥법’으로의 법령 명칭 및 조항 수정

가. 재검토기한 설정으로 규정 의무 이행(안 제21조)

- 1) 2022.1.1.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·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
사업자

제21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품질시험) ① (생 략)	제8조(품질시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품질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,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·관리하며 시험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</u>	1. <u>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·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21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 <u>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